

“오산세교 한신더휴” 당첨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, 계약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모든 증명서류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4.05.10)이후 발행본에 한합니다.

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당첨자 및 동 · 호수 발표 | | 2024. 05. 28(화) 조회방법 : 청약홈(www.applyhome.co.kr)접속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청약당첨조회 |
|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| 예약기간 | 2024.05.28(화) ~ 2024.06.08(토) / 10:00 ~ 16:00 |
| | 예약방법 |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예약 |
| | 서류접수일정 | 2024.05.30(목) ~ 2024.06.08(토) / 10:00 ~ 16:00(입장기준) |
| 정당계약기간 | | 2024.06.10(월) ~ 2024.06.14(금) 5일간 / 10:00 ~ 17:00 |

- ※ 건분주택에서는 당첨 동·호수를 유선상으로 안내하지 않으니 청약홈<https://www.applyhome.co.kr>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장 시 당첨자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당첨유형에 따른 검수시간이 상이하여 다소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- ※ 사전서류 미접수자는 정당계약 시 자격검증 절차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추가서류 검증절차로 계약서 불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서류접수기간내 자격검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- ※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분양 완료 후 파기합니다.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비서류

| 구분 | 해당서류 | 발급기준 | 서류안내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필수 서류 | 서약서 /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| - | 건본주택 비치 |
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본인 |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에 한함(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신청 시 인감도장 제출 생략) ※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신청 및 계약은 불가함 |
| | 신분증 | 본인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이후 발급여권제외) 등 |
| | 주민등록표등본(전부포함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부포함) | 본인 |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 관계 포함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혼인여부 및 자격 확인 |
| | 출입국사실 증명서 | 본인 | 1순위 자격요건 및 해외장기체류여부 확인(기록 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발급) |
| |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| 본인 / 소득발생 세대원 | 공고일 이후 발행 분(발급처 : 해당 직장 / 세무서) ※ 재직증명서 제출 시 회사직인 날인필수(근로자 : 재직증명서 / 자영업자 : 사업자등록증 제출) |
| |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공고기준 자격확인필요) |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제출하여야 하며, 표시 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[※건강(의료)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일 경우 건강(의료)보험증 제출가능]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|
| | 5개년도 소득증빙서류 (청약자 본인만 해당) | 본인 |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(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만1년 기간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를 포함) 서류 ※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서류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|
| | 소득증빙서류 | 본인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의 소득증빙서류 |
| 만19세 이상 세대원 | |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만19세 이상 세대원 소득증빙서류(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세대 구성원 을 포함) | |
| 추가 (해당자) | 주민등록표등본(전부포함) | 배우자 |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직계비속 | 신청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자로 만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로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주민등록표초본(전부포함) | 피부양 직계존속 | 가구원수 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이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[1년 미만 시 소득 산정 불필요] |
| | 임신증명서류 / 임신확인각서 ※ 확인각서 견본주택비치 | 본인 / 배우자 | 가구원수 산정 필요 시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※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(담당사명, 의료기관 등록번호,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날인 원본) |
|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/ 배우자 | 입양의 경우 |
|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| 본인 / 배우자 | 임신의 경우(출산이행확인각서 - 견본주택 비치) |
| | 소득세 납부사실증명 | 본인 |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 제출자 중 소득세가 발생한 경우(해당 5개 년도) |
| |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| 본인 |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총결정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세사실증명서상 "해당없음"으로 기재된 경우 발생한 세액에 대한 납부사실증명(5개 년도에 해당하는 년도 확인 발급) |
| | 부동산소유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|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[(발급기관)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(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) 발급 시(주민)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|
| |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부동산가액 산출 증빙자료 | |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 및 부속토지의 주택공시가격, 시가 표준액, 토지 공시지가 등 부동산 가액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 |
| | 부동산 자산보유 약약서 | 본인 및 세대원 | 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경우(견본주택 비치) |
| |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| | 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는 자 중 '부동산 소유현황'이 없는 경우 |
| |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|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|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|
| | 비사업자 확인각서 | |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견본주택 비치) |
| 대리인 | 위임장 | 청약자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 |
|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| 청약자 | 인감증명서(용도 : 대리인 위임용, 본인 발급용) |
| | 신분증, 도장 | 대리인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|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기간산정,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세대 구성 사유,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, 현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.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

-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(포함)되어야 할 내용 :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(전체 포함),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

■ 소득기준표

| 소득구분 | | 비율 | 소득금액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3인 이하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| 신생아우선공급, 우선공급 | | 130% 이하 | ~9,105,862원 | ~10,723,007원 | ~11,407,592원 | ~12,432,267원 | ~13,456,941원 | ~14,481,615원 |
| 신생아일반공급, 일반공급 | | 130% 초과 160% 이하 | 9,105,863원 ~11,207,214원 | 10,723,008원 ~13,197,547원 | 11,407,593원 ~14,040,114원 | 12,432,268원 ~15,301,251원 | 13,456,942원 ~16,562,389원 | 14,481,616원 ~17,823,526원 |
| 추첨 공급 |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| 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 | 11,207,215원~ | 13,197,548원~ | 14,040,115원~ | 15,301,252원~ | 16,562,390원~ | 17,823,527원~ |
| | 1인 가구 | 160% 이하 | ~11,207,214원 | ~13,197,547원 | ~14,040,114원 | ~15,301,251원 | ~16,562,389원 | ~17,823,526원 |
| | | 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 | 11,207,215원~ | 13,197,548원~ | 14,040,115원~ | 15,301,252원~ | 16,562,390원~ | 17,823,527원~ |

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: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{1인당 평균소득(788,211) × (N-8)} ×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
※ (가구원수 산정 기준)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. 단,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.

※ (월평균 소득산정 대상)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[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 부양) 포함]. 단,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.

※ (월평균소득)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.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(21번)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(수입금액)을 근로기간(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)으로 나누어 산정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(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)으로 나누어 산정

■ 소득증빙서류

[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.05.10(금) 이후 발행분]

※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.

※ 사업주체에서 자격검증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직장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입니다. 해당직장,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,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(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예외)

※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, 주민등록번호(13자리)가 모두 표기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| 구분 | 제출서류 | 발급처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|
| 일반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, 직인날인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, 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-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('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, 직인날인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|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, 직장 | |
| 근로자 |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제출 | ①, ② 해당직장 |
| 전년도 전직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전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직인날인) | ①, ② 해당직장 | |
|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발급자(프리랜서) | ① 신규취업자 :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② 계속적인 근로자 : ① 종합소득세 신고자 - 소득금액증명,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②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-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해촉증명서(직인날인) |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| |
| 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/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| 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 | ① 세무서 |
| 신규사업자 | 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원본) |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| |
| 법인사업자 |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무보수 법인대표의 경우 법인 재무재표 | ① 세무서 ② 세무서, 등기소 | |
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|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직인날인 급여명세서(간이지급명세서) | ① 세무서, 해당직장 | |
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① 수급자 증명서 | ① 주민센터 | |
| 일용직 근로자 |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(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)에 대한 직인날인 된 원천징수영수증 | ① 해당직장 | |
| 무직자 |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① 전년도 소득이 없고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②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,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※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서류 제출 ③ 소득사실증명(신고사실 없음) | ① 건본주택비치 ② 세무서 | |
| 기타 (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) |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(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)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징구 서류(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) |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② 해당직장 | |

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_ 5개년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

| 해당자격 | 제출서류(모든 서류는 상세본으로 원본제출) | 발급처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5개년) |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|
| 자영업자 | ① 사업자등록증(사본) ② 소득금액증명 ※ 추가첨부1 - 자영업자 중 소득금액증명상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사실증명 추가 제출 필요 ※ 추가첨부2 - 첨부1의 서류 제출시 납부사실증명상 납부내역 없음일 경우 "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" 추가 제출 필요(세액 발생 해당년도 전후 포함) ▶ 홈택스 → 신고/납부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(종합소득세 놓여준 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) ▶ 해당연도 내 환급 받지 못한 자 또는 사업자(개인사업자 포함), 직접납부자는 납부내역증명을 함께 발급 | ①, ② 세무서 |
| 농업인 5개년도 확인 |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5개년도 확인) | ① 관할 읍면동사무소 |

■ 자산보유기준

| 구분 | 자산보유기준 | 소득기준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 3100만원 이하 | 건축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- 주택 ①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: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② 단독주택 :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- 주택 외 :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
| | |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구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,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,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•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

■ 자산입증서류(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)

| 해당자격 | 발급기준 | 자산입증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|---|
| '부동산소유현황'이 있는 경우 | 필수 |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※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 및 토지대장 | ①, ② 대법원 등기소 (www.iros.go.kr) |
| | | 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]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[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③ 건물(토지)등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[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] (서울시: 'ETAX 이용안내' → 조회/발급 → 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'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 외: 위택스 → 지방세 정보 → 시가표준액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| ①, 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(etax.seoul.go.kr) 위택스 (www.wetax.go.kr) |
| | 해당자 | 농지법 및 초지법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| ① 농지원부 ② 자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 |
| '부동산소유현황'이 없는 경우 | 필수 | ① 부동산소유현황(세대원별 각각 발급) ※ 주민등록번호 공개 체크 ※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→ 등기열람/발급 → 부동산 → '부동산 소유 현황'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) | ① 대법원 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주민센터/행정복지센터 (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 불가) |